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심의관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윤리경영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윤리정책과로 개편하여, 공공기관 윤리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사감사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공공혁신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혁신기획과로 개편하여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며, 그 밖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이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전략적 홍보·소통을 강화하고, 2023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임용 사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그 밖에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

제16조제4항 중 “공공정책총괄과·공공제도기획과·재무경영과·평가분석과·인재경영과·윤리경영과·공공혁신과”을 “공공정책총괄과·공공제도기획과·재무경영과·평가분석과·인재경영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28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공공윤리정책과) ① 공공윤리정책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공윤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9조(공공혁신기획과) ① 공공혁신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공혁신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1 중 총계 “1,085”를 “1,075”로 하고, 일반직 계 “1,074”를 “1,064”로 하며, 서기관 “69”를 “67”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2”를 “91”로

하며, 행정사무관 “395”를 “392”로 하고, 행정주사 “129”를 “12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40”을 “3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085”를 “1,075”로 하고, 일반직 계 “1,074”를 “1,064”로 하며, 서기관 “69”를 “67”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2”를 “91”로 하며, 행정사무관 “409”를 “406”으로 하고, 행정주사 “114”를 “111”로 하며, 행정주사보 “40”을 “39”로 한다.

별표 4 2) 3) 및 4)를 삭제하고, 같은 표 5)부터 10)까지를 각각 2)부터 7)까지로 한다.

별표 4의2 제목 중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관련)”을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윤리정책과(존속기한: 2024년 9월 30일)

총계	6
일반직 계	6
서기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1

6. 공공혁신기획과(존속기한: 2024년 9월 30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별표 5의 제목 중 “(제28조 관련)”을 “(제30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제28조”를 “제30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변인) ① · ② (생 략)	제4조(대변인)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③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6. 그 밖에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u>
제16조(공공정책국) ① ~ ③ (생 략)	제16조(공공정책국)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공공정책국에 <u>공공정책총괄 과 · 공공제도기획과 · 재무경영 과 · 평가분석과 · 인재경영과 · 윤리경영과 · 공공혁신과</u> 및 경 영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 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 관으로 보한다.	④ ----- <u>공공정책총괄 과 · 공공제도기획과 · 재무경영 과 · 평가분석과 · 인재경영과</u> -- ----- ----- -----.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윤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삭 제></u>
1. <u>공공기관 윤리 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u>	
2. <u>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총괄</u>	
3. <u>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u>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그 밖
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
는 행정기관의 소관 공공기관
인사감사 지원 및 협의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
래행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
는 위법사유에 대한 평가 지
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2항에 따
라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
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7.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경
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점검 및 대응
8.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내부 시스
템 정비 점검
9. 공공기관 직원의 공정한 채
용 및 관련제도 정착에 관한
사항

9의2. 윤리경영 · 공정채용을 위
한 임직원 교육 · 컨설팅 활동
등에 관한 사항

1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청년 · 고등
학교 졸업 출신자 · 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 채용 제도 관
리 및 지원

11. 여성 · 장애인 관리자 확대
등 직장 내 사회적 형평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2.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
CS) 채용 및 정보 가림 채용
지침에 따른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3. 탄력근무제 ·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관리 및 지원

14. 그 밖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지
원

⑪ 공공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혁신지침 수립 ·
이행점검 및 지원

2. 삭제

<삭 제>

3. 공공기관의 협업(協業)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
4.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지원
5. 공공기관 고객현장 및 고객만족도 조사 제도 운영
6.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불만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7.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
8. 공공기관 혁신수준의 진단·평가 및 후속조치
9.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선정·이행점검 및 혁신 성공모델의 개발·보급
10.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 자문
11. 공공기관의 투명·윤리 및 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12.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원
13.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및 방만경영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관한 사항

15. 공공기관 혁신조달 지원확
대 및 정착을 위한 지원

16.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강화
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관
리 및 지원

⑫ (생 략)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
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
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⑩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

----- 같
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공공윤리정책과) ① 공공
윤리정책과장은 서기관으로 보
한다.

② 공공윤리정책과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

<u><신 설></u> <u>제28조</u> (생 략)	<u>와 같다.</u> <u>제29조(공공혁신기획과) ① 공공</u> <u>혁신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보</u> <u>한다.</u> <u>② 공공혁신기획과에 두는 공무</u> <u>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u> <u>와 같다.</u> <u>제30조</u> (현행 제28조와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1,085</u>		<u>1,075</u>	-10
일반직 계	.		.		.	
	.		.		.	
			<u>1,074</u>		<u>1,064</u>	-10
서기관	.		.		.	
	.		.		.	
			<u>69</u>		<u>67</u>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		.	
			<u>92</u>		<u>91</u>	-1
행정사무관	.		.		.	
			<u>395</u>		<u>392</u>	-3
행정주사	.		.		.	
			<u>129</u>		<u>126</u>	-3
행정주사보	.		.		.	
	.		.		.	
			<u>40</u>		<u>39</u>	-1
	.		.		.	
	.		.		.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085</u>	• <u>1,075</u>	-10
일반직 계	• • <u>1,074</u>	• • <u>1,064</u>	-10
서기관	• • <u>69</u>	• • <u>67</u>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u>92</u>	• <u>91</u>	-1
행정사무관	• <u>409</u>	• <u>406</u>	-3
행정주사	• <u>114</u>	• <u>111</u>	-3
행정주사보	• • <u>40</u>	• • <u>39</u>	-1
•	•	•	
•	•	•	